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-87호

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5호(2007. 11. 29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09-65호(2009. 12. 3.)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1-50호(2011. 8. 18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이후 영등포구고시 제2012-13호(2012. 3. 2.)와 영등포구고시 제2013-34호(2013. 5. 2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3-81호(2013. 9. 26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다음 영등포구고시 제2015-114호(2015. 12. 1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5-120호(2016. 1. 7.)로 준공인가 된 이후 영등포구고시 제2016-70호(2016. 8. 4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16년 10월 6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주택재개발사업,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위치 및 면적: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29-94번지 일대(50,759.30㎡)
3. 사업시행자: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성환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96-26호 3층)
4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: 2016년 9월 29일
5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1) 건축계획

건축면적 (㎡)	건축연면적(㎡)			건폐율(%)	용적률(%)
	계	지상	지하		
7,178.77	140,645.79	92,231.52	48,414.27	18.06	232.00

2) 토지이용계획

합계 (㎡)	분양대지(㎡)	정비기반시설(㎡)				
	분양 및 임대아파트 (근린생활시설 포함)	도로	공원	녹지	도서관	소계
50,752.0	39,755.40	6,158.4	1,929.4	608.4	2,300.4	10,996.6

나. 권리자별 관리처분

대상자	분 양				청산	수용	협의매수
	소계	공동주택	근린생활시설	주택 및 상가			
427인	289인	288인	1인	-	128	8인	2인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포함)

구분	용도폐지			신설				
종류	계	도로	주차장	계	도로	공원	녹지	도서관
규모(㎡)	3,767	2,881	886	10,996.6	6,158.4	1,929.4	608.4	2,300.4

라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									근린생활시설 (㎡)	
	계	39	49	59B	59A	84A	84B	84C	114	대지 면적	건축 연면적
계	949	82	72	18	225	91	263	181	17	456.21	1,484.95
조합원	288				115	45	80	44	4		
임대주택	172	82	72	18							
보류시설	-						-				
일반분양	489				110	46	183	137	13		

마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시기

- 2011년 8월 ~ 2013년 1월(철거완료)

6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(02-2670-3527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